

9. 建設技術管理法 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財政經濟院公告 第1997-36號 1997. 5. 7

주요 골자

- 가. 설계 또는 감리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증의 종류 및 방법과 보증기간 및 보증액을 새로이 정함
- 나. 설계심의대상을 현행 중앙건설기술위원회는 200억원이상, 지방위원회는 30억원 이상이었으나, 중앙위원회는 500억원이상의 P·Q대상공사, 지방위원회는 100억원 이상의 P·Q대상공사, 지방위원회는 100억원이상의 P·Q대상공사로 조정함.
- 다.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화위원회의 구성·운영·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라.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2종 시설물 등으로 정하고 수립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가 직접 품질시험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던 것을 제3자인 품질 검사전문기관이 제출하도록 하여 품질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 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강 구조물 제작공장의 등급인증 대상·기준·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사. 기술인력 수급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책임감리대상공사를 50억원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서 50억원이상의 P·Q대상공종으로 정함.

아. 건축사로 제한되어 있는 건축감리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토목·설비감리회사와 동일하게 완화함.

자. 감리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력, 자본등 등록기준을 현재의 2분의 1수준으로 완화함.

차.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건설기술 교육훈련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함.

개 정 이 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97. 1. 13)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